www.khidi.or.kr, www.khiss.go.kr

KHIDI Brief

발행일_ 2022. 11.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김영옥

보건산업브리프 Vol. 375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UAE 원격의료제도 소개 및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UAE지사 **이영호** 지사장, **김혜빈** 연구원



Contents

Ⅰ. 머리글

Ⅱ. UAE 원격진료 관련 법 및 조항

Ⅲ. 시사점

I 머리글

- 2019년 COVID-19 출현으로 전 세계 경제, 문화, 관광, 의료 등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COVID-19 확산, 방역, 치료 등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 변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 특성으로 인하여 비대면 상황이 원격의료에 부합되기도 하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원격의료 정책제도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는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하다가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1] 그러나 COVID-19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 상태에 달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2] 이에 따라, 국내 비대면진료 환자 수는 누적기준 '20년 2월 2만 4727명에서 '22년 1월 352만 345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3]

- 이러한 원격의료의 이용 증가율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20년 255억 달러에서 '25년 5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 UAE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수 년동안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아부다비보건청(DOH)은 2014년도에 초기 원격의료 규제체계안을 마련하였고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9월 16일 DOH는 제도를 정비하여 '원격의료 표준(DOH STANDARD ON TELE-MEDICINE)'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부다비 원격의료 표준을 UAE 연방법(MOHAP) 및 현지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맞게 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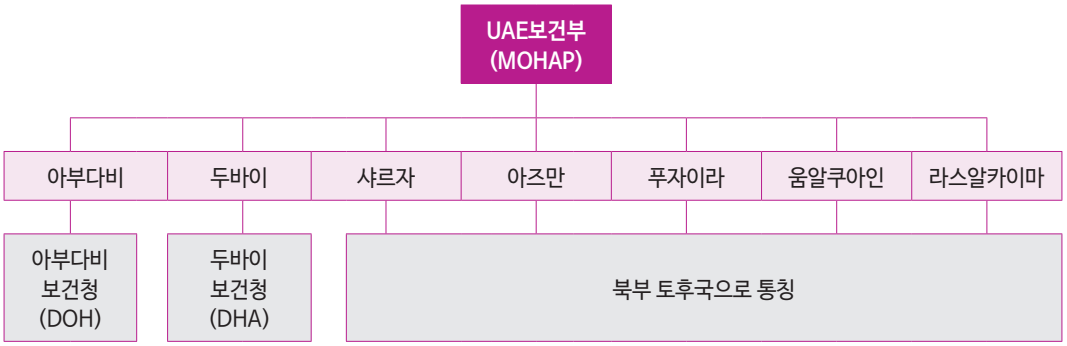
- UAE는 한국의 해외환자유치 주요 국가 중 하나이고 보건의료협력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UAE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를 조사하고 UAE 환자대상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참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국무회의 의결, '2020.12.8)
3)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4) Markets and Markets(2020), "Telehealth Market"

Ⅱ UAE 원격진료 관련 법 및 조항

1. UAE 보건부처 관계 현황

- UAE는 1971년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하였으며, 행정구역은 아부다비(수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푸자이라, 움알쿠아인 및 라스알카이마의 7개의 개별 토후국 연합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의 토후국을 북부 토후국으로 통칭함
- UAE내 의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부문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기관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가 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토후 정부는 보건 및 의료 활동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 법률,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각 아부다비보건청(Abu Dhabi Department of Health, DOH),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DHA)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개별 토후국 내 보건 및 의료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기관과 개별 토후국 보건당국 간의 규제 및 범위는 중첩됨



[그림 1] UAE 보건부처 관계도

2. UAE 연방법(UAE Federal Laws Governing Telemedicine)

2.1. UAE 2019 내각 결의안 제 40번(UAE Cabinet Resolution No 40 of 2019)

⦿ 2019 결의안은 UAE의 원격의료제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및 특별 규정을 명시

〈표 1〉 UAE 원격진료 서비스의 정의

원격 의료 상담 (Remote Medical Consultancy)	원거리에 위치한 당사자 (예: 의사-환자 또는 의사-의사) 간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 상담
원격 치료법 진단 (Remote Treatment Diagnoses)	원격 또는 환자의 내원을 통한 의료 상담 이후, 원거리에 위치한 당사자 (의사-환자) 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치료법 진단
원격 진단 (Remote Diagnosis)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파악 및 진단
원격 의료 모니터링 (Remote Medical Monitoring)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행위
원격 의료 개입 (Remote Medical Intervention)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개입

- 원격진료 서비스 수혜자는 ①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는 것 ② 문진과정 녹음 및 녹화 및 ③ 개인 신상정보제공에 동의해야하며, 특정 원격진료 서비스에 관해선 개인정보 및 기술적 서류가 추가로 요구됨
- DOH, DHA 등 개별 토후국 내 보건당국이 원격진료와 관련한 라이센스 발급 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련 보건당국을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3. ICT 보건법(ICT Health Law)

- ICT 보건법은 UAE 전역에 적용되며 의료 부문에서의 데이터 처리, 현지화 및 보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보건당국이 환자의 전자 상 기록의 기밀유지 및 통제를 위한 표준을 수립하도록 요구
- 단일화된 연방정부 의료 기록 저장보관 시스템 구축
- 개별 토후국의 보건당국 또는 MOHAP의 승인 없이 환자 데이터의 해외 전송 제한

3.1. ICT 보건법 - 데이터 현지화 (13조) (Federal law No. 2 of 2019, ICT HEALTH LAW - Data Localisation (Article 13))

- 개별 토후국의 보건당국 또는 MOHAP의 승인 없이 해외로 의료 정보 전송 및 해당 정보의 저장, 가공처리, 생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내용을 어길 시, 최대 AED 700,0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다만 UAE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결의안을 공표한 사례는 없음
  - 실제 UAE에서 의료 정보 전송이 필요한 경우 한국 소재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나 암호화시켜 전송하여도 해당 사항은 UAE ICT 보건법에 위반됨. 한국 소재 의료기관이 UAE기관의 포털 접속권한을 부여받고, 환자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등 ICT 보건법을 준수하는 내에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열람 가능

4. UAE 토후국별 원격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4.1. 아부다비 보건청 (Abu Dhabi Department of Health, 2020년 9월 16일 공표 표준 규정 기준)

- 원격 의료상담 (Tele-counselling)
  - (제 9.6조) UAE 외의 해외 거주 의사의 경우 DOH 면허를 취득한 UAE 소재 의료기관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 또는 한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원격진료를 위해 DOH 인가를 받은 UAE 소재 의료기관과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① 파트너십 계약 당사자인 의료기관은 의료책임보험(medical liability insurance) 제공 등의 소재 국가 규제 내역 준수

    ② 파트너십 계약 관련 사항의 승인 및 관리를 수행할 시설 관리 담당 직원 배정

    ③ DOH 면허를 보유한 의료기관 및 의사가 환자의 상태 평가, 검사 결과 및 진단, 치료 및 관리, 후속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는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의 의료 및 치료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④ 파트너십 계약 상대방이 외국기관인 경우, UAE 소재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재 국가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보건당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해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를 충족하도록 해야 함

⑤ 파트너십 계약 당사자는 DOH 및 아부다비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기술적 요건 및 임상 요건을 계약 내에 포함하여야 함

- (제 9.2조) 환자가 1차적으로 상담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제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 전송 시, 해당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및 철저한 보안 보장. 특히 ICT 보건법에 따라 해외로 환자의 의료 정보 전송 시 DOH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

◉ 원격 의료 개입 (Tele-medical Intervention)

- DOH 표준 규정은 해외 의료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의사가 원격으로 의료 개입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또는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시행하는 수술, 치료, 진단 등도 원격 의료 개입 행위로 포함
- 원격 의료 개입을 위한 세부 계약 요건도 상기 4.1조에 명시한 원격 의료 상담 요건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추가사항을 포함

① 환자에 대해 의료 개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② 원격으로 의료 개입을 시행하는 의사가 아부다비에 있는 경우 DOH 또는 관련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해외에 있는 경우 개별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함

③ 수술용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한 의료진이 환자 옆에서 항시 대기하여 로봇 작동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바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④ 실제 원격 의료 개입이 행해지는 의료기관 내 기반시설이 DOH 의료시설 설계지침(DOH Guidelines for Health Facilities Design)을 준수하여야 함

⑤ 원격 의료 개입 시 사용하는 수술용 로봇은 보조기술로서, 의료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료진은 직접 수술용 로봇을 작동 및 통제하여야 함

⑥ 진료실 또는 수술실에 관련 로봇 장비 및 기기(예: 원격 수술용 로봇 및 장비, 정밀검사용 로봇 및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⑦ 원격 의료 개입이 행해지는 의료기관 및 진료/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 간의 의료 정보 전달 시, 환자의 사생활과 더불어 해당 의료 정보의 기밀유지와 보안을 보장해야 함

◉ 원격 의료 처방 (Tele-Perscribing)

- DOH 표준 규정에 따르면 UAE 외 제 3국에 위치한 의사가 UAE내 거주중인 환자의 약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며 UAE 보건당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 및 원격의료 관련 면허를 보유한 UAE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만 원격 처방이 가능함

◉ 아부다비 의료 정보 및 사이버 보안 표준 (Abu Dhabi Healthcare 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Standard; 이하 ADHICS 표준)

- (2019년 2월 3일 공표 기준) ADHICS표준은 DOH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 열람이 가능한 의료진, 보조인력, 검사실, 처방약 조제시설, 보험사에도 적용됨
- (제 6조 4.2항) 정보보안 세부 규정

① 의료 기관은 의료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저장처리 또는 공유 수단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② 의료 기관은 의료 정보가 해외로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함

③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또는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 정보를 가공, 저장, 사용하는 기관과의 시스템 통합 여부 확인 및 차단

④ 아부다비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필요한 의료 정보를 상대방 또는 제 3자와 공유 금지

◉ 원격진료 관련 환자 동의에 대한 DOH 표준 (DOH Standard on Patient Consent Telemedicine Services)

- (제 9조) 2016년 공표 기준

① 환자 또는 대리인은 실제 의료 행위를 담당할 의료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정보 변경 시, 원격 의료 상담, 개입 또는 치료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만약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 3의 의료기관이 원격진료에 합류하는 경우, 원격 의료 개입 또는 치료 이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승인을 받아야함

③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원격 네트워크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함

④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사진, 녹취록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없음

⑤ 원격 의료 개입 동의서 및 관련서류 상에 동의 내역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야함

⑥ 대리인의 환자와의 관계, 동의서 서명일시 및 동의서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는 모두 문서화

4.2. 두바이 보건청 (Dubai Health Authority, 2020년 9월 16일 공표 표준 규정 기준)

◉ 두바이 보건청 원격진료 관련 규정(DHA Tele-health Regulation)

- (2017년 2월 공표기준) 본 규정은 프리존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청(DHCC)을 제외한 두바이 전역에서의 원격진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며, 원격진료 서비스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함

〈표 2〉 DHA 원격진료 서비스 범주

원격의료 상담 (Tele-counselling)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 진단, 의료 상담, 환자 교육, 2차 소견 제공 등을 수행하는 것
원격의료 (Telehealth or Telemedicine)	광범위한 실시간 (real-time) 의사소통, 원격 환자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

- (제 4조) 두바이 내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사자는 다음의 두 요건을 반드시 준수

① 두바이 내에서 예방, 치료, 회복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Health Facility)을 설립하고

② DHA에서 원격진료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 DHA의 승인을 받아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경우에도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DHA로부터 추가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환자의 진료장소(원격진료를 받는 환자의 위치) 혹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사가 원격진료를 하는 장소)에 해당 요건은 모두 적용됨

- 의사의 2차 소견 제공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포함

〈표 3〉 2차 소견 제공 관련 주요 요건

제5조 4항	환자의 상태 평가, 의료 데이터 열람, 전송, 및 저장, 환자의 동의, 의료진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등 의료기관 내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수립
제7조 3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공시
제7조 5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제7조 8항	UAE 법에 따라 DHA가 통계 및 관련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 개발
제8조 1항	의료기관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시, 개별 기관 간에 서면계약 체결 및 이행
제10조 2항	원격의료 서비스를 상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및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면허정보 등 특정 정보는 실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진료기록 내 서면 또는 전자 상으로 기록
제10조 3항	타 기관 소속 의사가 원격으로 2차 소견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소견내역을 기록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

◉ DHA 원격진료 표준 (DHA Standards for Telehealth Services)

- DHA 원격진료 표준은 DOH 표준과는 달리,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바이가 아닌 제 3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사와 두바이에 소재한 의료기관/의사 간 파트너십 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DHA 관할지역 외에 소재한 의사가 두바이에 있는 환자에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의사는 DHA로부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기타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함
- 하지만 한국 의료면허를 보유하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의사(이하 한국 의사)는 별도로 DHA의 면허취득 없이 DHA 면허를 보유한 의사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 의사가 두바이에 있는 환자에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의사는 DHA로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만약 환자가 UAE 의료기관의 별도 의뢰 없이, 한국 소재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해당 환자가 두바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소재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한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환자가 두바이에 거주하더라도 UAE에서 면허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다만 UAE 소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한국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두바이에서는 DHA 면허를 취득한 의사만 약 처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발행한 처방전은 두바이 약국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의사는 두바이에 거주하는 환자에 약 처방이 불가함
- 한국 의료기관 및 의사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원격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음:
  ① DHA 인가를 받은 UAE 현지 의료기관 및 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을 수 없음
  ② 한국 의료기관은 DHA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는 안되며, DHA 소재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를 유치하려 하거나 한국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함
  ③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홍보할 수 없음
  ④ 두바이 의료기관이 한국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의뢰 시, 해당 기관 간의 연관성이 발생하므로 한국 의료기관/의사는 UAE 현지 원격진료 면허취득 요건을 숙지해야 함

◉ 원격 방사선진단 관련 규정 (Tele-radiology Regulation)

- DHA는 원격 방사선진단을 통해 영상 검사(diagnostic imaging)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
- 2012년에 발표된 영상 검사 규정은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 및/또는 영상자료 해석은 실제 영상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제 3자에게 위탁시 서명계약을 통해 가능

- 관련 영상 검사자료 전송 시, 기밀유지 및 가시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송해야하며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또는 원격 방사선 등과 같은 기술의 사용도 허용
- 두바이에서 원격 방사선진단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영상 검사 기관은 DHA에 해당 시설에서 제공예정인 서비스와 현재 보유한 기술이 표준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야함
- 원격 방사선 진단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기관(이하 전송 기관)은 적어도 방사선 전문의, 방사선 촬영기사, 정보과학 부문에서 인증 받은 시스템 관리자 각각 1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전송될 영상에 대한 선택권은 방사선 전문의에게 있으며 원격 방사선 진단 관련 자료를 수신하는 기관(이하 수신 기관)은 해당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원격 방사선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방사선 전문의를 반드시 고용해야함
- 영상 검사 규정에 따라 전송 기관과 수신 기관 모두 컴퓨터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IT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고, 수신 기관 소속 의료진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상기의 전송 기관의 요건과 동일하며 어떠한 경우든 두바이 영상 검사 기관은 원격 방사선진단 서비스 개시 이전에 반드시 DHA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함
- 관할권 외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인 관점에서는 현지 면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임상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DHA에서 공표한 병원 및 외래진료센터 규정(Hospital Regulation and Day Surgical Centre Regulation)에 따라, 외부기관을 통해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DHA의 면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제공된 임상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현지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외부 기관과 계약 체결 시, 원격 방사선진단의 진행방향, 계약 당사자 간 의무 및 책임 범위, 환자의 불만이 있을 시 당사자 간 협력 등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책임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5. 북부 토후국

- 북부 토후국은 샤르자(Sharjah), 아즈만(Ajman), 푸자이라(Fujairah), 움알쿠아인(Umm Al Quwain),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를 가리키며, 이들 북부 토후국에는 원격진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2.연방법 에서 언급한 연방법이 적용됨

6. 한국 의사의 원격진료를 위한 면허취득 요건 및 소요기간

- ICT 보건법에 따라 UAE에서 의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의사의 면허는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UAE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사는 면허 상에 반드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면허 상에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이 표기됨으로 아직 소속 의료기관이 없는 의사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관련 보건당국에 면허 교부를 신청하고, 인증서(letter of eligibility)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은 소속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최종 면허를 획득한 이후부터 가능(만약 개인이 관련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개인 및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두바이에서는 두바이보건청(DHA)이 두바이 내 의료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함으로 DHA는 두바이 전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의 면허발급 권한을 보유
- DOH는 아부다비 소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관리감독하며 DHA와 유사한 온라인 포털 및 면허신청절차를 운영
- 북부 토후국의 경우에는 MOHAP이 규제기관으로서 해당 토후국 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관리감독 함

◉ 의료진 통합 자격요건(Healthcare Professionals Qualification Requirements)

- 2014년에 공표된 의료진 자격요건(Healthcare Professionals Qualification Requirements 2014; 이하 PQR)을 통해 UAE 내 의료진의 면허발부와 관련한 통합된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해당 PQR은 2020년 내각 결의안 제 288번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 PQR은 MOHAP, DHA, DOH가 공동으로 공표하였으며, 토후국 내 의료진의 자격요건을 표준화하는 데 목적을 둠. 그러나 개별 토후국의 보건당국이 PQR을 채택하였어도 이들은 여전히 각 토후국 내 의료진 면허와 관련하여 별도 승인 권한을 행사
- 각 토후국 별 보건당국은 의료진이 면허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 검토 시, PQR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면허 발급절차를 통합화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DOH면허를 소지하고, 아부다비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이 두바이로 옮기는 경우, DHA에 면허 이전 또는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해외 당국에서 발급한 면허의 경우, 해당 해외면허를 보유한 의료진이 PQR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 시험을 통과하였거나 특정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등록증 또는 면허 소지 시에는 UAE 면허취득에 필요한 평가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UAE 면허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해외 인가기관에서 발행한 '면허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Status)'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료 활동과 관련한 사고나 징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기타요건으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UAE 면허 신청자의 자격증명, 경력 등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인정하는 내역(Primary Source Verification)도 제출해야 함(해당 의료진의 의료 활동 공백이 2년을 초과할 시, 일부 요건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통합된 면허발급 제도 하에서, 관련 의료진은 의료진 등록부서(Health Registration Department)에 면허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처 취득 시까지는 통상 4개월 정도가 소요
- 해당 의료진은 해외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자격증명 및 경력 등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인정하는 내역증명서, 의료사고 보험증명서(UAE 내에서 채용 예정인 병원에서 정책 상 요구하는 경우), 의료진단서(의료진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 내역서를 통해 UAE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진의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검증

7. 의료배상 책임 관련하여 한국에 위치한 의사에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및 조치

- 한국에서 의료면허를 취득하고 한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중인 의사는 향후 UAE 내에서 원격진료 서비스 추진계획 시, 2016년에 UAE 연방정부가 공표한 의료배상책임에 대한 법 및 관련 내각 결의안(Federal Law No. 4 of 2016 concerning Medical Liability and the Resolution, which govern medical liability laws in the UAE; 이하 UAE 의료배상책임법)을 숙지해야 함
- UAE 의료배상책임법은 UAE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해당 법령 및 개별 토후국 내 보건당국은 해외 면허를 보유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사가 UAE 소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UAE 내 환자에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해외 의사가 UAE 소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UAE 법을 적용 받는 계약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UAE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외 의사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UAE 의료배상책임법은 의사가 법적 표준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아래의 표4 참조)

〈표 4〉 다음과 같은 의사의 행위로 인해 의료과실(medical error)이 발생한 경우

i	해당 의사가 동일한 수준의 학위 및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가 숙지해야 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ii	해당 의사가 전문적의료적 표준 준수를 하지 못한 경우
iii	해당 의사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사전조사 (due diligence)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iv	해당 의사의 주의력이 결핍되어 적절한 조치 없이 행동한 경우

◉ UAE 의료배상책임법 제 6조(Medical Liability and the Resolution)

- UAE 의료배상책임법에 따라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는 MOHAP이 조직한 의료배상책임 위원회(Medical Liability Committee)에서 검토심사를 담당
- UAE 의료배상책임 위원회는 UAE 및 해외 의료진과 협력이 가능한 의료부문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 수립된 표준에 따라 의료사고를 검토함으로써 모든 의료사고가 바로 UAE 법원으로 회부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중대한 의료사고만이 해당 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UAE 의료배상책임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배상 청구건을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배상책임 위원회는 관련 의사를 직접 소환하여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해당 의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료배상책임 위원회는 의사 부재 상태에서 관련 절차 진행 후, 결정을 내림
- UAE 의료배상책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상급 위원회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후 상급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림
- UAE 의료배상책임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관할권 외에 소재한 의사에 적용 시
  ① 의료배상책임 위원회 검토결과, 해당 의사의 치료행위가 법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의사는 손해배상내역 산정을 위해 민사법원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약정이나 법원이 승인한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
  ② 의료배상책임 위원회가 현지 보건당국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보건당국은 관련 의사의 UAE 면허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징계에는 경고 또는 면허 일시 정지 등이 있지만, 아주 드물게 UAE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음
- 또한 한국 의사는 ICT 보건법 불이행 시의 제재 조치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재 내역에는 벌금 및 징계 조치가 포함됨. 해당 조치는 개별 토후국의 보건당국 내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ICT 보건법 제 25조에 따라 아래의 표5과 같은 제재를 포함

〈표 5〉 ICT보건법 제 25조에 따른 ICT 보건법 불이행 제재 조치

조치 i	환자의 의료 기록 관련하여 중앙 시스템 (Central System) 사용 권한 취소
조치 ii	최대 5개월 간 중앙 시스템 접속이용 권한 일시 정지
조치 iii	구두 및/또는 서면 경고
조치 iv	최소 AED 1,000에서 최대 AED 1,000,000에 달하는 벌금 부과

8. UAE 보건당국이 한국에 기반을 둔 의사를 제재할 가능성

- UAE 보건당국은 UAE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만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한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UAE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 면허를 취득하면, UAE 연방 및 개별 토후국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일반적으로 UAE 내 의료사고를 현지 법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보통 환자가 의료 서비스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어 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엔 이를 현지 법원에서 담당
- 한국 의사가 UAE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UAE 소재 환자 및 의사는 한국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따라서 한국 의사는 UAE 소재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시 배상 조항(indemnity clauses)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

9. 한국 의사가 UAE에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 (현 UAE 법률 체계 토대)

- 한국 의료면허를 보유한 한국 의사가 UAE에 위치한 환자에게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아래의 옵션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옵션 1) 한국에서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 UAE 소재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가 없었고, 한국 소재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를 수락한 시점에 해당 환자가 UAE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한국 소재 의료기관과 UAE 환자 간에 직접적인 관계로 간주하여 해당 환자가 한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문제가 없음(실제로 미국 의료면허를 보유하고 미국에 위치한 의사가 UAE 환자에게 미국에서 시작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보면 환자가 UAE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UAE면허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음. 다만, 한국 소재 의료기관 및 의사는 한국에서 한국 환자를 상대로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지만, UAE 환자를 상대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의료 서비스 광고행위를 할 수 없음)
-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인지해야함:
  ① 환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UAE 소재 의료기관에서 한국으로 전송 할 수 없음
  ② 원격진료 시, 한국 의사는 UAE 소재 환자에 약 처방을 할 수 없음
  ③ UAE 현지 의료기관 및 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는 안 됨
  ④ 한국 소재 의료기관은 UAE 의료기관과 어떠한 연계가 있어도 안 되며, UAE에 있는 환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의료기관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없음
  ⑤ 한국 소재 의료기관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 금지
  ⑥ 만약 UAE 소재 의료기관이 한국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시에는 UAE와 연관성이 형성되므로 해당 한국 의료기관/의사는 UAE원격진료 서비스 관련 요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옵션 2) DOH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

- 상기의 '4. UAE 토후국별 원격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DOH 표준에 따라 한국 소재 의료기관은 원격 의료 상담 및 원격 의료 개입 서비스 제공을 위해 DOH 인가를 받은 현지 의료기관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한국 의사는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DOH로부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이 DOH 면허를 보유한 의료기관과 서면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다만, 한국 의사가 아부다비에 위치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DOH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즉, 한국 의사는 DOH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과의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2차 소견을 포함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옵션 3) 한국의사의 UAE 의료 면허 취득

- 한국 의사는 UAE 면허 취득 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UAE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UAE 환자에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후, 해당 한국 의사는 MOHAP 및 개별 토후국 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이와 관련하여 '6. 한국 의사의 원격진료를 위한 면허취득 요건 및 소요기간'서 UAE 면허 발급을 위한 세부 요건을 확인)
- 현재 몇몇 한국 병원은UAE 소재 의료기관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UAE 의료기관 부지 내에 개별 클리닉(Internal Clinics) 형태로 운영 중에 있음

① 킹스칼리지런던병원(King's College of London Hospital) 내 우리들병원, 에미레이츠병원(Emirates Hospital) 내 나누리병원, 샤르자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Sharjah) 내 힘찬병원 등

- 해당 클리닉에 파견된 한국 의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UAE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해당 클리닉이 입점한 UAE 소재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면허를 보유한 경우,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한국 의사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옵션 4) UAE에 의료기관 설립

-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UAE에서의 의료서비스 홍보마케팅을 위해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활동을 위한 면허를 취득해야 함
- 한국 의료기관/의사는 UAE에 의료기관 설립 후, 원격진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UAE에 설립된 의료기관은 UAE 면허를 보유한 의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한국에 위치한 의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 2015년에 공표된 연방법(Federal Law No. 4 of 2015 on Private Health Facilities; 이하 민간 의료기관법)은 민간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면허 요건을 규정함
- UAE 내 신규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당사자는 면허 신청을 위해 먼저 규제기관에 예비승인을 위한 기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면허는 UAE 법에 따라, 법인이 아닌 UAE 국적을 보유한 개인 명의로 발급됨
- 또한 관련 당사자는 면허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설계 및 시범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의료기관 건설 시 현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함
- 의료기관 설립 시, 관련 당사자는 면허 신청 과정에서 병원, 개인 클리닉, 치과, 재활센터 등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서비스 활동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해당 활동 내역은 토후국 별로 상이할 수 있음(신규 의료기관의 최종 면허가 발급되기 이전에, UAE 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실사 등 엄격한 조사를 하며, 면허 발급 소요기간은 의료기관이 수행하려는 사업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UAE 당국에서 면허 발급을 거부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거부 결정 통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MOHAP 장관 또는 해당 보건당국 기관장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이후 추가 번복 시 관련 당사자는 현지 관할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신규 의료기관 설립 시,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한 예외 사항은 없으며, 관련 당사자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함
- 일반적으로 갱신 기간은 1-5년으로 기관 별로 상이하며 면허 취득갱신 요건 위반 시, UAE 규제기관은 해당 면허에 별도 요건 적용,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민간 의료기관의 총 책임자(general manager)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6개월의 징역형 및 AED 100,000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Ⅲ 시사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AE지사는 COVID-19 이후 한-UAE간 원격진료서비스 제공에 대비하여 한국 소재 의료기관/의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였다.
- 만약 환자가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우, DOH는 원격진료 면허를 보유한 아부다비 소재 의료기관과 해외 소재 의사간에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한국에 위치한 의사는 원격진료 시 UAE 소재 환자에 별도로 약을 처방하거나 한국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보낼 수 없다. 만약 한국 의사가 UAE 환자에 약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DOH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두바이 내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사자는 두바이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DHA로부터 원격진료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기타 규제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북부토후국은 원격의료제도의 UAE 연방법을 따르며 특히 의료 부문에서의 ICT 보건법의 데이터 처리, 현지화 및 보안에 관한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상기 '9. 현 UAE 법률 체계를 토대로 한국 의사가 UAE에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의 '옵션 1) 한국에서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경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소재 의료기관/의사는 UAE에 위치한 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UAE 환자에 한국에서 시작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원격진료 시, 한국 소재 의료기관/의사는 UAE 환자를 상대로 의료서비스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약 처방 또한 불가함을 명시하였다.
- 본 브리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UAE에서는 환자 관련 정보의 기밀유지 및 의료 데이터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우든 UAE 보건당국의 승인 없이 UAE 소재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따라서 한국 의사는 UAE 의료기관과 원격진료 계약 추진 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health-and-fitness/telemedicine
https://www.dha.gov.ae/uploads/112021/ed87dd02-d072-4555-a3d8-3a53778d648c.pdf
https://www.doh.gov.ae
https://www.law.go.kr/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telehealth-market-201868927.html
https://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101

◉ 집필자 : UAE지사 이영호지사장, 김혜빈 연구원 ◉ 법률자문: Al Tamimi & Company ◉ 문의 : +971-2-643-442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한국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